

# 수의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제도의 이해

## I. 들어가는 말

## II.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

1. 간이과세사업자의 의미
2.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와의 비교
  - 1) 납부할 세금계산 방법의 차이
    -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 방법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 방법
  - 2)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에 의한 차이
  - 3) 신고서양식에 의한 차이
  - 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장단점 비교
  - 5)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요약표
4. 재고자산 매입세액공제
5. 신고납부방법
6. 가산세

## III.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1. 현금영수증 의미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3. 현금영수증 수수효과 및 세법상 혜택
4. 가산세 및 과태료

## IV. 애완동물 진료용역 과세전환

## V. 마치며



**김천옥**  
한일세무법인 대표이사  
haniltaxkim@yahoo.co.kr



**조상일**  
한일세무법인 연구세무사  
taxshelter@daum.net

## 수의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제도의 이해

###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독립적으로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 한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매입자는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만 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간 상호견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양성화를 유도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살펴보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간이과세자였던 수의사분들이 일반과세자로 강제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향후 수의사업종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수의사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되었기 때문에 2010년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사업자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살펴보고 추가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 II.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

#### 1. 간이과세사업자의 의의

본래 부가가치세란 아래 <표 1>의 일반과세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고 한다)의 경우와 같이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공급받은 가액×10%)을 공제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매출세액은 매출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적색)에 의하여 집계되며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청색)에 의하여 집계되어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납세자에게 이러한 복잡한 과세절차를 요구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하는 등 간단한 방법으로 부

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를 간이과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라고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거래단절의 방지와 부동산투기 규제목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일정한 전문업종(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경우에는 격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의미에서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그 업종 자체로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이 전문업종에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의 업종이 추가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 표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유형	구분기준	납부세액 계산구조
일반과세자	① 법인사업자 ② 개인사업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 2.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 1) 일반과세자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3)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4) 간이과세 배제업종
  - ① 광업
  - ② 제조업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 양복 양화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사업적용 가능)
  - ③ 도매업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도 포함)
  - ④ 부동산매매업
  - ⑤ 서울시, 광역시, 시 지역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과세유흥장소
  - ⑥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1)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⑦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일반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자.

###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와의 비교

#### 1) 납부할 세금계산 방법의 차이

##### ■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A. 매출세액의 계산

- 공급가액<sup>2)</sup> × 부가가치세율 10% = 매출세액

#### B. 매입세액의 계산

- 공급받은 가액<sup>3)</sup> × 부가가치세율 10% = 매입세액

#### C. 기타공제 매입세액의 계산

-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sup>4)</sup> × 의제매입세액공제율<sup>5)</sup>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취득가액 × (중고품)

#### D. 경감공제세액의 계산

-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 발행 · 결제금액<sup>6)</sup>의 1.3% (한도 연간 700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 100원 (한도 연간 100만원)

1) 2010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매출금액을 말하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금액을 말한다.

3)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된 금액을 포함한다.

4)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매입가액

5)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업종	개인	법인
음식점업	8/108	6/106
과세유통장소영위사업	4/104	4/104
위 이외의 업종	2/102	2/102

6)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PLANNING

## 기획 II

수의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제도의 이해

E. 기납부세액의 계산 :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예정신고기간 중에 발생한 환급세액<sup>7)</sup>
- 예정고지세액 = 예정신고시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

F. 가산세의 계산 : <표 12>에서 자세하게 후술함.

< 표 2.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 구조 >

A. 매출세액	공급가액×부가가치세율(10%)
B. 매입세액	공급받은 가액×부가가치세율(10%) •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
C. 기타공제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D. 경감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E. 기납부세액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F. 가산세	사업자미등록, 세금계산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G. 납부할 세액	G=A-B-C-D-E+F

###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표 3>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 매출세액의 계산 :

- 공급대가<sup>8)</sup> × 업종별 부가가치율<sup>9)</sup> × 10% = 매출세액

7) 예정신고기간 중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시 환급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으로 차감한다.

8)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금액을 말한다.

9)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소매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20%(소매업 15% 적용)
건설, 부동산임대, 기타 서비스	30%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업, 통신업	40%(음식숙박업 30% 적용)

매출세액은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10%를 곱하여 계산한다.

B. 매입공제세액의 계산 :

- 매입세액<sup>10)</sup> ×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받은 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C. 공제세액의 계산 :

-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 (음식점업만 적용)

-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 발행 · 결제금액<sup>11)</sup>의 1.3%(음식점 · 숙박업 2.6%) (한도 연간 700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 100원 (한도 연간 100만원)

D. 가산세의 계산 : <표12>에서 자세하게 후술함.

< 표 3.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 구조 >

A. 매출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B. 매입공제세액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공제
C. 공제세액	• 의제매입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D. 가산세	사업자미등록,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E. 납부할 세액	E=A-B-C+D

10)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

1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PLANNING

## 기획 II

수의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제도의 이해

〈 표 7.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

[ 별지 제20호의 서식 ] (2010. 3. 31 개정)

( 앞 쪽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input type="checkbox"/> 확정 <input type="checkbox"/>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휴대전화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소매업 (1)		$\frac{15}{100}$	$\frac{10}{100}$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		$\frac{20}{100}$	$\frac{10}{10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3)		$\frac{30}{100}$	$\frac{10}{100}$	
	운수·창고 및 통신행업 (4)		$\frac{40}{100}$	$\frac{10}{100}$	
	영세율 적용분 (5)			$\frac{0}{100}$	
	재고납부세액 (6)				
	합 계 (7)				㉒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기 타 (13)				
합 계 (14)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5)					㉓
가 산 세 계 (16)		뒤쪽 참조			㉔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㉒) - (㉓) + (㉔)					㉕

업 태	종 목	업 종 코드	금 액
(18)			
(19)			
(20)	기타(수입금액 제외분)		
(21)	합 계		

업 태	종 목	업 종 코드	금 액
(22)			
(23)			
(24)	수입금액 제외분		
(25)	합 계		

4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5 폐업신고	폐업연월일	폐업사유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장단점 비교

아래 <표 8>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을 항목별로 비교했다.

< 표 8. 장단점 비교 >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VAT 부담	① 매출 시 판매가격의 10%를 판매가격에 가산하여 소비자로 부터 징수하여 납부하고, 매입 시 매입관련 부가가치세액은 100%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수만 성실히 이행된다면 사실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다.	①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	① 매입세액은 100% 공제가 가능하다. ② 사업초기의 경우 거래의 매입이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할 수 있다.	① 매입시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00% 공제할 수 없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② 사업초기의 경우 거래의 매입이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
세금계산서발행	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② 세금계산서 발행에 오류가 있을 경우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다.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②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고내용	① 신고내용과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번거로울 수 있다.	① 신고내용과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
소액납부 의무면제	① 없다.	① 6개월 매출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가 면제된다.
예정고지	① 있다.	① 없다.

#### 5)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요약표

위에서 서술한 내용의 요약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들은 아래 <표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표 9. 비교 요약표 >

구분	일반과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사업자	• 직전 1억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공급가액+VAT)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 100%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PLANNING

## 기획 II

수의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제도의 이해

구분	일반과세	간이과세
예정신고납부	① 자진신고납부 다만,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원칙으로 함 ②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생략함	해당사항 없음
대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음	적용받을 수 없음
의제매입세액공제	업종	① 농산물 등 매입가액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만 해당) ② 음식점업이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 공급대가의 5%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제대상으로 함.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신고 하는 경우 10,00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환급세액에 가산함)	전자신고 하는 경우 10,00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환급은 불가능)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발행 · 결제금액의 1.3% (한도 : 연간 700만원)	발행발행 · 결제금액의 1.3% (음식점업 및 숙박업은 2.6%) (한도 : 연간 700만원)
가산세	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②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 × 10%	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②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 × 10%
세금계산서	① 세금계산서 발급 ② 재화 · 용역공급시 거래징수의무가 있음	① 영수증발급만 가능 ② 거래징수의무 해당사항 없음
신고납부	① 법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② 개인 : 예정고지 징수 원칙 (그러나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생략함) 및 확정신고 납부	확정신고납부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없음)
소액납부의무면제	없음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포기제도	포기제도 없음	간이과세포기하고 일반과세 전환가능

### 12)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업종	개인	법인
음식점업	8/108	6/106
과세유희장소영위사업	4/104	4/104
위 이외의 업종	2/102	2/102

#### 4. 재고자산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일 시점(2010년 7월 1일)의 재고자산에 대하여서는 2010년 7월 1일 이후 매출할 때에 매출세액(공급가액 × 10%)에서 재고자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만 과세형평에 맞게 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재고자산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재고자산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0>와 같다.

< 표 10.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재고매입세액공제 제도) >

재고납부세액 계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고품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li> <li>• 감가상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또는 구축물의 경우 취득, 건설, 신축 후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li> <li>-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 취득한 것</li> </ul> </li> </ul>
재고품	{10} over {110}

#### 5. 신고납부방법

아래 <표 11>와 같이 1월부터 3월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은 제1기 확정신고기간, 7월부터 9월은 제2기 예정신고기간, 그리고 10월부터 12월은 제2기 확정신고기간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예정신고 대신에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한다. 그러나 일반과세자 중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생략한다. 그런데, 과세당국이 고지를 하지 않고 반드시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와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정하여 두고 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예정고지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2010년 7월 1일부터 수의사업은 유형전환 되었으므로 반드시 예정신고 해야 하는 사업자가 되었다. 즉, 7월부터 9월의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표 11. 확정 신고납부기간 >

사업자	과세기간	예정/확정 신고기간	신고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예정 1.1~3.31	4월 25일 (고지)
		확정 1.1~6.30	7월 25일
간이과세자	제2기 7.1~12.31	예정 7.1~9.30	10월 25일 (고지)
		확정 7.1~12.31	익년 1월 25일

### 6.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가산세이다. 가산세는 행정벌적 성격으로 납세의무자들이 법에서 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한다. 아래 <표 12>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한 신고 납부관련 가산세에 대해서 요약한 자료이다.

< 표 12. 부가가치세 가산세 >

구분	작용대상	가산세액
현금매출명세서 등 미제출가산세	① 전자자격사업자가 미제출, 수입금액 허위기재 ②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액명세서 미제출 수입 금액 허위기재 <sup>13)</sup>	수입금액 × 1% <sup>14)</sup>
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 미납부	불이행세액 × 1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미달신고 ② 영세율첨부세류 미제출	공급대가 × 1%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일반 무신고 ② 일반 과소신고 ③ 일반 초과환급신고	산출세액 × 20% 산출세액 × 10% 산출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 과다환급받은 때	일일 3/10,000
등록불성실가산세	미등록가산세	공급대가 × 0.5%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① 부실기재(필요적 기재사항) ② 미발급(공급시기에 미발급) ③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수령 ④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수령	공급가액 × 1% 공급가액 × 2% 공급가액 × 2% 공급가액 ×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① 합계표 미제출 ② 합계표 부실기재 ③ 지연제출 (예정신고시 제출할 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 × 1% 공급가액 × 1% 공급가액 × 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① 경정시 확인을 거쳐 받는 때 ② 동일 과세기간 내 지연수령하여 매입세액공제 받는 때 ③ 공급가액 과다기재신고	공급가액 × 1% 공급가액 × 1% 과다기재분 공급가액 × 1%

13)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

14) 2010년 6월 30일까지는 0.5%

### Ⅲ.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 1. 현금영수증 의의

현금영수증제도란 사업자와 최종소비자 간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서 둘 사이의 거래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카드나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자는 크게 소득세법 별표3의2 규정에 따라 소매업, 제조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업, 운수업, 각종 학원,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등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아래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특히 2010년 4월 1일부터는 고액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제도를 시행한다. 변호사 및 의사 등 전문직종, 입시학원·골프장업·장례식장업·부동산중개업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 3. 현금영수증 수수효과 및 세법상 혜택

< 표 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 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 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 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자의 경우에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정규증빙에 해당되어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초과 시 정규증빙자료, 건당 접대금액 1만원 초과 시 정규증빙자료로 인정받아 복리후생비, 접대비(한도 내의 금액) 등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를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당 2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과세자료의 양성화로 인한 과세표준의 현실화에 기여한다.

#### 4. 가산세 및 과태료

국세청은 초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제도 정착을 위해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을 운영하고 있다. 아래 <표 1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소득세 추징과는 별도로 미발급 금액(30만원 이상의 경우)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한,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원이고 동일인에게는 연간 1,500만원 이내이다. 이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하여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sup>15)</sup> 따라서 수의사업을 비롯한 전문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혹시 상대방이 영수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과태료의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게 될 것이다.

< 표 1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규정 >


	30만원 이상 거래시	30만원 미만 거래시
가맹점 미가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한 이유없이 가입거부 시 경정조사</li> <li>미가입기간에 일수계산의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2010.9.28. 0.5%를 1%로 상향조정안 발표됨)</li> <li>미가입한 과세기간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li> </ul>	
거래상대방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 발급	• 발급
거래상대방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	■ <b>발급의무화</b>	• 변호사업, 약사업, 수의사업 등 전문직 및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등은 미발급거래에 대해서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다.
발급거부 시	• 3회 이상으로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확정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부 감면조항 배제	
미발급시 제재	•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li> <li>•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금액의 1% 가산세</li> </ul>
신고포상금	• 미발급금액의 20% (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 발급거부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15) 국세청고시 제2010-5호 (2010. 03. 26)

## IV. 애완동물 진료용역 과세전환

기획재정부가 2010년 8월 2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sup>13)</sup>과 애완동물 진료용역<sup>14)</sup>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인간의 질병치료를 한하여서만 면세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부가가치세 신규세원 발굴 등을 목적으로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개정된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201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축 및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sup>15)</sup>은 계속해서 면세로 유지된다.

## V. 마치며

이상 2010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부가가치세제도 중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와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첫째, 수의사업종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두 201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사업자가 되었다. 따라서 수의사의 매출금액에 대하여서는 세무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 둘째, 201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른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201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1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분에 대한 예정신고를 2010년 10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넷째, 수의사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반드시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에는 고객의 요청이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다섯째, 이때까지 면세용역으로 되어 있는 애완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용역으로 변경된다는 발표가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 : 한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김천옥 / 연구세무사 : 조상일

Tel. 02-564-6986 Fax. 02-554-2599

<http://www.haniltax.com>

16)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17) 수의사법 제2조3호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진료용역  
18) 축산물가공처리법 상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 상의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